

공항 환송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모멸적 대우금지에 대한 권리¹⁾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각각 이라크,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시리아에서 온 4명의 청구인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망명신청 심사를 받는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송구역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²⁾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억류 환경이 동 협약 제3조³⁾의 모멸적 대우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년 3월 28일 유럽인권재판소 소재판부(Chamber)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5조 제1항 및 제3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러시아 정부가 이에 항소하며 대재판부(Grand Chamber)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유럽인권협약 제43조⁴⁾).⁵⁾ 이 요청이 받아

1) CASE OF Z.A.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s nos. 61411/15, 61420/15, 61427/15 and 3028/16, 21 November 2019.

2) 유럽인권협약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밑줄 표시함)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 외에 그리고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나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자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이나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의 회부를 목적으로 하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구금 또는 정신이상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불량자의 합법적인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체포나 구금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해지고 있는 자의 합법적인 체포나 구금.

3) 유럽인권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4) 유럽인권협약 제43조 (대재판부로의 회부)

1.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들여져 이 사건은 대재판부로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21일, 대재판부는 전원일치로 다시금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 Z.A.는 이라크 국민으로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⁶) 군사집단의 협박으로 이라크를 떠나 터키에서 1년간 거주 후 중국으로 갔고, 다시 비행기로 중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터키로 갔지만, 비자가 없음을 이유로 터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보내졌다. 청구인 M.B.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권 소지자로 가자 지구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하였고 이후 사업비자를 가지고 러시아에 도착하여 이르쿠츠크에서 지냈으나 비자기간 만료로 인해 추방 판결을 받고 다시 이집트를 거쳐 가자 지구로 가는 비행기를 탔지만 환승지인 팔레스타인 라파시(市)가 폐쇄되어 다시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보내졌다. 청구인 A.M.은 소말리아 국민으로 저널리스트로 일하였고 2005년 예멘으로 이주해 난민지위를 얻었다. 2010년 그는 다시 소말리아로 돌아와 국립TV채널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였는데 알샤바브⁷에 의해 청구인의 7세 아들이 살해당하고 청구인도 고문을 당했다. 청구인은 다시 예멘으로 도망쳤고 예멘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 갈등과 예멘에서의 혐오 증가 때문에 쿠바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사나(예멘)-이스탄불(터키)-모스크바(러시아)-하바나(쿠바)로 이어지는 여행 끝에 쿠바에 도착하자마자 망명신청을 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고 망명신청은 진행되지 않았고, 키토(에콰도르)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쿠바로 추방되었고, 다시 쿠바에서 러시아로 보내져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오게 되었다. 청구인 Hasan Yasien은 시리아 국민으로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에 임시망명을 신청하였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그는 주 레바논 러시아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

5)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대부분은 소재판부의 단심으로 마무리되며, 대재판부로의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6)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7) Al-Shabaab.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대사관에서 러시아 사업비자를 획득하여 러시아에 왔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러시아에 남아 있다가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에 임시망명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했고 또다시 추방명령을 받았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터키행 비행기를 타면서 러시아 국경수비국은 그의 여권을 압수하여 항공승무원에게 넘겨주었다. 터키 당국은 청구인의 입국을 거부하여 그를 다시 모스크바로 돌려보냈고, 러시아 당국은 그를 또다시 터키로 돌려보냈으며, 터키 당국은 다시금 그를 모스크바로 보냈다. 청구인은 결국 레바논행 비행기를 탔지만 레바논 당국도 그의 입국을 거절하며 그를 모스크바로 돌려보냈다.

청구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그들의 체류 환경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항상 불이 켜진 번잡하고 시끄러운 공항 탑승구역의 바닥 매트리스에서 잤고, 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환승구역에는 없었다. 유일한 무료 샤워시설은 구금자들을 위한 방에 위치해있었는데 평소에 잠겨 있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국경수비국⁸⁾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몇 번 이용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였고, 야외운동도 불가능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대리인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소송대리 위임장이 필요한데, 청구인들은 공증인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임장 발급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료, 법률, 사회, 우편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국경수비국이 여권을 압수하여 청구인들은 환승구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유엔난민기구 러시아 지부가 소개한 변호사들과 접견할 때마다 국경수비국 공무원들이 항상 참관하였다.

2. 판결요지

법정의견(전원일치)

8) Russian Border Guard Service(BGS)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1)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위반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세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억류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자유의 박탈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환승구역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아직 심사받지 않은 망명신청자 상태였다. 그들은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긴 기간 동안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거나 의사 및 공중인의 방문을 받을 수 없었고, 변호사와의 접견은 조건부이거나 종종 거절되었으며, 국경수비국이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환승구역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유의 박탈에 유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의 박탈과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과의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억류를 승인하는 어떠한 법원이나 공식적인 결정도 없었으며, 억류의 적법성이나 기간을 평가하는 법적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 공백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의 쟁점은 러시아 당국이 자신들의 망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의 부재 · 적용되었어야 할 규정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위반 · 인간존엄성에 대한 고려나 의도의 결여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러시아 정부의 주장

반면 러시아 정부는 진정한 난민과 이민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후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제3국으로 이주하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관점에서 이 사건 청구인들은 난민협약⁹⁾이 규정한

9)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은 위험국으로부터 직접 러시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망명을 주장하기 위한 첫 도착국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으며,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망명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망명시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러시아 정부는 청구인들이 러시아 이민당국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이 본국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신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험가능성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망명사건 전문가인 변호사를 접견한 뒤부터 주장된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청구인들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해 러시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반드시 그 국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필수적인 서류나 러시아 입국을 위한 유효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유효한 비자나 난민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고의적으로 입국하려 한 것은 러시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의 박탈에 대해 유효하게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청구인들의 여권이 압수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 결국 그렇게 하였듯이 - 언제든지 러시아를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박탈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①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

i) 일반원칙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서,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 제2조에 의해 규정되는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관계가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자유를 박탈

당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정한 실제 상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조치의 유형, 기간, 결과와 시행방식과 같은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유의 박탈과 제한의 차이는 정도나 강도의 문제이지 성질과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¹⁰⁾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체류가 자유의 박탈에 이르는지에 관한 문제는 여러 사건에서 다루어져 왔다.¹¹⁾ 공항 환승구역의 외국인의 억류라는 맥락에서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자유의 박탈을 구분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i)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과 선택, ii) 적용가능한 각국의 법제도와 그 목적, iii) (특히 목적과 청구인이 사건을 기다리는 동안 받았던 절차적 보호를 감안한) 해당 기간, iv) 청구인에게 가해지거나 청구인이 겪은 실제적 제한의 성질과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ii) 원칙들의 적용

a)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과 선택

청구인들은 모두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공항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기에 러시아 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국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하였거나 러시아로 강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청구인들은 러시아에 망명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 개인이 구급에 동의하였다 해도 그 구급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자유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자신이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¹²⁾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 법률이 자유의 박탈을 규정하는 상황이거나, 청구인이 교도소나 경

10) De Tommaso v. Italy [GC], no. 43395/09, § 80, 23 February 2017; Kasparov v. Russia, no. 53659/07, § 36, 11 October 2016 참고.

11) Amuur v. France, 25 June 1996, § 43; Shamsa v. Poland, nos. 45355/99 and 45357/99, § 47; Mogoş v. Romania (dec.), no. 20420/02, 6 May 2004; Mahdid and Haddar v. Austria (dec.), no. 74762/01, ECHR 2005-XIII (extracts); Riad and Idiab v. Belgium, nos. 29787/03 and 29810/03, § 68; Nolan and K. v. Russia, no. 2512/04, §§ 93-96, 12 February 2009; Gahramanov v. Azerbaijan (dec.), no. 26291/06, §§ 35-47.

12)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8 June 1971, § 65, Series A no. 12; I.I. v. Bulgaria, no. 44082/98, §§ 84-87, 9 June 2005; Osypenko v. Ukraine, no. 4634/04, § 48, 9 November 2010; Venskutė v. Lithuania, no. 10645/08, § 72, 11 December 2012; Buzadji v. Moldova [GC], no. 23755/07, §§ 106-10, 5 July 2016 참고.

찰서에 구금되거나 가택연금될 의무를 따르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해당 국가와는 사전적 연결관계가 없었고, 묵인해야 할 의무도 없었으며, 다만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입국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당국에 대한 청구인 개인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청구인들이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비자발적으로, 그러나 러시아 당국의 개입 없이 들어왔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

β) 적용가능한 법제도와 그 목적, 그 목적과 수반되는 절차적 보호를 감안한 해당 기간

세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에 적용가능한 국내법 제도의 목적이 당국이 공식적으로 망명신청자를 러시아에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동안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이 환승구역에 남아 머물렀던 주된 이유는 망명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다른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당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심사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의 대기 는 국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¹³⁾

적용가능한 법제도의 목적이라는 면에서, 청구인의 망명신청 과정에 관한 절차적 보장과 그들이 환승구역에서 머무는 최장기간을 정하는 국내법 규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 정부는 청구인들의 환승구역에서의 최장 체류기간을 정하는 국내법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망명신청자들에게 심사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와 망명신청 심사 동안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 권리를 보장한 러시아 국내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청구인들을 환승구역에 방치하였고 청구인들은 각 난민지위와 임시망명 신청의 결과에 대해 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13) 3일 이내의 기간에 공항 환승구역에서 망명신청이 기각된 경우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고 보았던 사건으로 Mahdid and Haddar v. Austria (dec.), no. 74762/01.

청구인의 환송구역에서의 체류가 망명신청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중대하게 초과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체류기간 그 자체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적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이 과도한 대기기간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와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런 면에서 환송구역에서의 체류기간을 한정하는 국내법 규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각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전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Z.A.는 망명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7개월 19일을 환송구역에서 지냈으며, M.B.는 5개월 1일, A.M.은 최소 1년 9개월 28일, Yasien은 7개월 22일을 환송구역에서 지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황은 심사지연과 러시아 당국의 부작위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γ) 청구인에게 가해지거나 청구인이 겪은 실제적 제한의 성질과 정도

청구인들은 대체로 환송구역 내에 방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구역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의 국경수비국의 영구적 통제하에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상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Amuur v. France¹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망명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피난가기 원하는 국가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점을 상기하며, 만일 다른 국가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떠날 가능성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토지 국경 환송구역과 달리, 이 사건에서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떠나는 것은 계획수립, 항공사와의 연락, 티켓 구입, 목적지에 따라서는 비자신청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언제라도 러시아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없이 공항 환송구역을 떠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14) Amuur v. France, no 19776/92, 25 June 1996.

있었음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한다.

8)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의 최장 체류기간을 정하는 국내법 규정의 부재, 세레메티예보 공항 환송구역에서의 체류가 대체로 불규칙적인 점, 그러한 체류의 과도한 기간, 청구인들의 망명신청 심사의 상당한 지연, 청구인들이 지내야 했던 장소의 성격과 해당 기간 동안 따라야 했던 통제, 그리고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구역을 떠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 내에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고 판결한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은 적용가능하다.

② 청구인들의 자유의 박탈과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과의 양립가능성

청구인의 자유를 박탈한 목적은 무허가 입국을 막기 위해서이므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제f호의 첫 번째 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심사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이 사건의 억류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인지 여부이다.

i) 일반원칙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은 개인이 적법하게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보장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외국인의 입국, 거주, 추방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가 입국허가를 신청한 이민 지원자들을 억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필연적인 부속물이다. 영토 내로의 무허가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망명신청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자체로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자유의 박탈도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의 박탈에 관한 한, 법적안정성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며,

그러므로 자유의 박탈의 조건은 국내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법률 자체도 그 적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더구나 인신의 구금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주된 장애(障害)가 되므로 항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방대한 수의 망명신청자들이 도착하는 기간 동안 회원국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의금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적법성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국내법 제도에 의해 - 환승구역에서의 자유의 박탈을 명할 수 있는 기관, 그 명령의 형식, 가능한 근거와 한계, 구금의 최장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도 충분히 -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제f호는 망명신청자가 밀려들 경우에 구금을 명할 수 있는 국내법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ii) 원칙들의 적용

청구인들은 세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 억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고 지적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러시아 법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의 억류에 대한 엄격히 정의된 법규상의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위반이 될 것이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상황을 악화시킨 추가적인 요소들도 지적하고자 한다. 환승구역에서는 망명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법적 지원에 대한 접근도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망명절차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청구인들은 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때 심각한 지연을 겪었고, 서류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규정된 심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장기 체류하는 동안 명백히 부적절한 장소에 억류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청구인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관련 절차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상당하고 명백하게 과도한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억류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제f호의

첫 번째 절의 목적에 따른 유럽인권협약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따라서 각 청구인들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한다.

(2)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세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의 열악한 물질적 여건에서의 체류는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구금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외국인의 구금은 적당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용납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동안 환승구역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러시아 정부의 주장

러시아 정부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했던 청구인들에 대하여 동협약 제3항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망명권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없지만, 국가는 박해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청구인들이 망명신청 당시 악의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망명신청이 부적합함을 알았음이 틀림없고, 러시아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였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① 일반원칙

혹독한 대우가 제3조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혹성의 최소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 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고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주로 그러한 대우의 지속기간,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영향,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는 국가가 구금여건을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양립가능하도록 만들고, 해당 조치의 이행이 구금 본연의 불가피한 고통의 수준을 초과하여 피구금자가 고통과 고난을 받지 못하게 하며, 감금의 실질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녕이 적절히 지켜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¹⁵⁾

외국인과 망명신청자에 관한 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기준을 반복하여 언급한 바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이러한 구금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동반되어야 하고, 국가가 - 국제적 의무에 따르면서 -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민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잦은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 해도 이 때문에 난민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이 제공하는 망명신청자에 대한 보호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 사람이 처한 특정한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민주사회의 가

15) Kudła v. Poland [GC], no. 30210/96, § 94, ECHR 2000-XI.

16)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 216-18, ECHR 2011. 그 밖에 Dougoz v. Greece, no. 40907/98, § 44, ECHR 2001-II; Kaja v. Greece, no. 32927/03, §§ 45-46, 27 July 2006; S.D. v. Greece, no. 53541/07, §§ 45-48, 11 June 2009; Mahamed Jama v. Malta, no. 10290/13, §§ 86-89, 26 November 2015;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 163-67, 15 December 2016; Boudraa v. Turkey, no. 1009/16, §§ 28-29, 28 November 2017; S.F. and Others v. Bulgaria, no. 8138/16, §§ 78-83, 7 December 2017 참고.

장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를 새긴, 그리고 상황과 피해자의 행위에 상관없이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구금의 물리적 여건이 제3조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로 충분한 개인공간의 필요성 외에도 야외운동, 자연채광 또는 공기, 환기에 대한 접근권과 기본적인 위생의 준수를 언급하였다.

② 원칙들의 적용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약국들이 밀려드는 이민자와 망명신청자들에 대응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고, 그러한 부담과 압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인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의 금지는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라는 점을 반복하여 말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바로 유럽인권협약의 본질 중 하나인,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명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금지는 절대적인 것으로, 해당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국가의 삶을 위협하는 공공 긴급상황이나 테러·조직범죄와의 싸움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체약국들의 어려움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의무로부터 면책되게 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였고, 러시아 정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설명이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여러 자료들에 근거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세레메티예보 공항의 환승구역에서의 체류여건이 강요된 장기간의 체류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불이 항상 켜진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항 환승구역 바닥에서 자야 했고, 샤워나 요리 시설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았으며, 야외운동 기회도 없었고, 의료적·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 기회도 없었다. 이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 국내법이 모든 망명신청자들에게 심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망명신청 심사기간 동안 이들을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들을 환송구역에 방치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긴 구금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청구인들의 억류기간은 연속으로 수개월간 이어졌다. Z.A.는 7개월 19일, M.B.는 5개월 1일, A.M.은 최소 1년 9개월 28일, Yasien은 7개월 22일을 억류되어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열악한 물질적 여건과 러시아 당국이 청구인들을 돌보지 않았던 점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 모멸적인 대우가 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각 청구인들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3조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한다.

(3) 주문

위와 같은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 (청구인들을 공항 환송구역에 억류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위반이다.
- 2) (청구인들을 공항 환송구역에 억류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위반이다.
- 3) 러시아는 청구인들에게 3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일 당시의 러시아 통화 환율로 변환하여 지급한다.

①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M.B.에게는 15,000 유로와 부가되는 세금;

Z.A.와 Yasien에게는 20,000 유로와 부가되는 세금;

A.M.에게는 26,000 유로와 부가되는 세금.

②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리인의 은행계좌로 청구인 공동에게 19,000 유로와 부가되는 세금.